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수신 서울특별시(재생협력과장)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(서울특별시,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)

1. 재생협력과-5314(2018.4.11.)의 관련입니다.
2.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3. 질의요지
 -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
4. 회신내용
 - ?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?제8조제1항제1호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사무관대우 김준영 시설사무관 유상철 주택정비과 과장 유상술 전결 06/05

협조자

시행 주택정비과-2915 (2018.06.05.) 접수 재생협력과-8168 (2018.6.5.)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/ <http://www.molit.go.kr>
전화 044-201-3386 /전송 044-201-5532 / kjy2543@molit.go.kr / 대시민공개